

26. 알바니아(Alban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47년
- 현행법 : 1993년(사회보험), 2016년(장애사회부조연금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: 농업 종사자 포함하여 근로자 및 자영자, 임의가입자
- 사회부조 : 알바니아 시민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
 - 총 월소득의 8.8%
 - 납부보험액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은 월 최저임금과 동일(24,000 leks)
 - 납부보험액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은 105,850 leks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
 - 월 최저임금(24,000 leks)의 21.6%
 - 농업종사자의 정액보험료 : 연 29,400 leks(고지대), 연 38,400 leks(저지대)
 - 농업종사자의 보험료는 모성급여의 재원이 됨
 - 사회부조 : 없음
- 사용자
 - 사회보험
 - 총 월 임금지급총액의 12.8%
 - 납부보험액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은 월 최저임금과 동일(24,000 leks)
 - 납부보험액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은 105,850 leks
 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
 - 결손액
 - 실업급여 수급자, 의무 복무하는 군인, 광부, 퇴직여성, 특정 기타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;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사회부조 : 전액비용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 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이상인 65세(여자 60.8세) 도달자 중 퇴직한 자
 - 2033년과 2056년사이에 67세 도달까지 1개월씩(여자 2개월) 점차적 증가
 - 8세 이상 자녀를 6인 이상 양육하는 모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이면 55세부터 수급 가능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36년 4개월 이상인 자의 퇴직연령 도달 3년 전까지 감액 지급 (2029년에 40세로 연 4개월씩 점차적 증가)
 - 연기연금 : 연령제한 없음
 - 퇴직연령 도달시 근로활동 정지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 심사)
 - 최근 5년 이상 알바니아 거주하고 어떠한 사회보험 및 연금 수급자가 아닌 70세 이상인 자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20세부터 가입자의 현재 나이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최소 75%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입한 완전 장애인(시각장애인, 심각한 신체장애자, 근로활동 불가자) 또는 부분 장애인(일상근로는 불가하나 특별한 환경하의 근로는 가능한 자)에게 지급
 - 장애 발생일 전 5년동안 1년 이상의 가입기간 포함
 - 부분장애연금 : 33%~ 67%의 근로능력상실자
 - 완전 및 부분장애 수당 : 장애수급자 (또는 퇴직 연령 전 장애발생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)
 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입자
 - 자녀수당 : 자녀가 18세(대학생 또는 장애인일 경우 25세)에 도달할 때까지 각 자녀별로 지급

- 노령연금액이 장애연금액보다 많을 시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장애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대체 가능
- 장애 정도는 의료전문가위원회(Medical Experts Committee)에서 심사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
 - 출생,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판단된 자로서 사회보험 중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자
 - 보호자수당 :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하는 자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 (사회보험)
 - 사망 당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가입중인 자
 - 수급권자
 - 8세 미만 피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생존하는 배우자
 - 장애가 있는 배우자
 - 55세 이상 미망인(홀아비는 60세 이상)
 - 18세(학생인 경우 25세, 유년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고아
 - 사망 전 12개월 동안 주거를 같이 한 65세 이상 피부양 부모와 조부모
 - 피부양 손자녀
 - 재혼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정지
- 장제비 (사회보험)
 - 가입자 및 수급자이거나 그들의 피부양자 사망시 지급
 - 가입기간이 최소 26주 이상이어야 함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법률상 요구되는 가입기간*과 가입자의 가입기간의 비율 × 노령사회연금액 × 가입자의 연간 평균소득의 1%
 - * 2018년 기준 36년 4개월, 연간 4개월씩 상향되어 2029년에 40년에 달함
 - 월 최저노령연금액은 월 노령사회연금액임 (7,064 leks)
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전 월 0.6%씩 감액지급
 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후 월 0.5%씩 가산지급
 - 급여조정 : 매년 조정됨
- 노령사회연금 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월 7,064 leks 지급

-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다른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노령사회연금의 차액 지급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사회 보험)

- 법률상 요구되는 가입기간*과 가입자의 가입기간의 비율 × 노령사회연금액 × 가입자의 연간 평균소득의 1%

* 2018년 기준 36년 4개월, 연간 4개월씩 상향되어 2029년에 40년에 달함

- 월 노령사회연금 : 7,064 leks
- 월 최저연금 : 법정 최저임금(24,000 leks) 의 75%
- 부분장애연금 : 완전장애연금의 50%
- 장애수당 : 완전장애 월 3,300 leks, 부분장애 월 2,200 leks 지급
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의 평균 소득신고액의 15% 금액 지급
- 아동수당 : 기본 정액연금액의 5% 지급
- 급여조정 : 노령연금액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• 장애사회연금 (사회부조)

- 장애로 인해 어떠한 노동활동을 하지 않는 자 : 월 10,850 leks 지급
- 하반신 또는 전신마비 환자 : 월 10,330 leks 지급
- 맹인 : 월 11,730 leks
- 급여조정 : 연금액은 CMD(Council of Ministers Decisions)에 의해 매년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배우자연금 : 사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(사회보험)의 50%
- 고아연금 : 사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의 25%
 -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단독 완전 고아에게는 50% 지급
- 기타유족연금 : 각 유족에게 25% 지급
- 유족연금 총 합산액은 사망자 노령연금액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(생존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권리로 연금을 받는 경우는 50%)
- 급여조정 : 연금액은 CMD(Council of Ministers Decisions)에 의해 매년 조정됨

• 장제비 (사회보험)

- 기본 월 노령사회연금의 한 달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기본 월 노령사회연금 = 법률상 요구되는 가입기간*과 가입자의 가입기간의 비율 × 노령사회연금액 × 가입자의 연간 평균소득의 1%
- 월 노령사회연금 : 7,064 leks

7. 관리운영기관

- 경제재정부 (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s)와 3자 행정위원회 (tripartite Administrative Council)
 - <http://www.financa.gov.al/>
 - 전반적 감독

- 사회보험청(Social Insurance Institute)
 - <http://www.iss.gov.al>
 - 제도 관리 및 농자영자 연금 관리

- 세무부 (General Directorate of Taxes)
 - <http://www.tatime.gov.al/>
 - 근로자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연금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